

## 직원 재심위원회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루터교학원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.) 정관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징계재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재심위원회)** 이 법인과 루터대학교 일반직원의 징계처분,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직원 징계재심위원회(이하 “재심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**제3조 (구성)** ① 재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 직원 징계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법관, 검사,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
2.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
3. 학교법인의 이사 및 감사
4. 교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**제4조 (위원장선출 및 직무)** ①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②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.

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 (재심청구)** ① 징계처분 및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징계의 결서 또는 기타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재심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과 서류를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재심청구자의 소속기관명, 직, 성명, 주소, 생년월일과 성별
2. 징계의결서 또는 기타 처분서의 사본
3. 재심청구의 서류
4. 재심에 필요한 증거

**제6조 (심사)** ①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.

② 재심위원회가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관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④ 재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.

**제7조 (심사의 범위)**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.

**제8조 (재심청구인의 진술권)** ①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재심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.

**제9조 (재심청구의 취하)** 재심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.

**제10조 (결정)** ①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재심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.

② 재심위원회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재심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재심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.

1.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
2.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

③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재심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.

④ 징계 처분이 법령의 적용,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에게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징계, 기타처분이 확인될 때 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**제11조 (재심 심사 결정서 작성)**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 심사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, 날인 하여야 한다.

1. 재심사건 당사자의 표시
2. 결정 주문
3. 결정 이유의 개요
4. 증거의 판단

**제12조 (재심 심사 결정서의 송부)** ① 재심 심사 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재심청구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 심사 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재심위원회의 과실 없이 재심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인의 주소, 성명과 결정주문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 주일이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재심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.

**제13조 (재심결정의 효력)**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.

**제14조 (위원의 수당과 여비)** 재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5조 (간사와 서기)** ① 재심위원회에 간사 또는 서기를 둔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일반직원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**제16조 (운영세칙)** 재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관 및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심위

1-0-3 직원 재심위원회 규정

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